Eunpyeong-Gu

Ⅱ

수급자 급여 · 자활사업

2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6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27 국민기초생활보장 감면제도
28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29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30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31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현황
32 자활사업 서비스 안내
33 차상위 자활사업
34 국민취업지원제도Ⅱ(舊취업성공패키지)
35 가사 · 간병방문 지원사업
36 긴급복지지원



북한산 큰 숲, 내일을 여는 은평

2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총괄〉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351-7061~5
- 〈조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351-7021~35
- 〈변동〉 생활복지과 통합관리팀 ☏351-7091~9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신청방법			○ 신 청 인 : 수급권자 · 친족 ·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 재산 확인서류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범위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재산의소득환산액	적 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6,900만원(생계 · 주거 · 교육), 5,400만원(의료)
		주거용재산	○ 환 산 율 : 월 1.04% ○ 적용한도 : 대도시 1억2천만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으로 산정) ○ 범 위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거용 목적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 환 산 율 : 월 4.17%(주거용 재산 제외) ○ 범 위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자동차【① 장애인사용자동차(2000cc미만 승용차, 11인승~15인승 승합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정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자가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미만 자동차), ② 생업용자동차(1600cc미만 승용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③ 1,600cc미만 승용차(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차량, 질병 ·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④ 1,000cc미만 화물 · 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10년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차량, ⑤ 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⑥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⑦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⑧ 소유자의 요청 · 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⑨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등】
		금융재산	○ 환 산 율 : 월 6.26% ○ 범 위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공 제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 이상 장기저축 1,500만원(연간 한도액 500만원)
		자동차	○ 환 산 율 : 월 100% ○ 범 위 :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부 채	○ 정 의 :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용도 :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 한정 ○ 범 위 :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및 미소금융 대출금, 법원의 판결문, 화해 ·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부양의무자		○ 범 위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 중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의료급여 : 부양능력 있음(수급선정 제외)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 부양능력 없음(수급자 선정) ○ 주거 · 교육급여 : 해당없음
지원절차			신청서류 제출 및 초기상담(동 주민센터) ⇒ 서류 접수 및 조사(복지정책과) ⇒ 보장결정, 통지, 급여지원(생활복지과) ⇒ 수급자 관리(동 주민센터, 생활복지과)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 장제급여, 자활급여, 복지감면 등

26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351-7061~5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선정기준(A의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 교육급여 · 교육경비 지급 기준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수 업 료	교육급여 수 급 자	고 등 학 생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분기별 지급
입 학 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1학년 1분기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3월)
교육활동 지원비 (부교재비 + 학용품비)		초 등 학 생	연 331,000원	연 1회(3월)
		중 학 생	연 466,000원	
		고 등 학 생	연 554,000원	
교통비(시비)	생계 · 의료수급자인 중 · 고등학생		연 345,600원 (720원 × 일 2회 × 월 20일 × 12개월)	연 4회 (3, 6, 9, 12월)

3. 기타 지원 기준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세부 지원기준 및 시기
해산급여	생계 · 의료 · 주거 수급자	700,000원	*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지원
장제급여	생계 · 의료 · 주거 수급자	800,000원	* 사망자 1구당 800천원 지원
명절위문금(시 · 구비)	생계 · 의료수급자	40,000원	* 설날(1월), 추석(9월) 2회 지원
월동대책비(시비)	생계 · 의료수급자	50,000원	* 11월중 1회 지원
정부양곡지원	생계 · 의료수급자	10kg 23,820원 (1인, 월10kg)	* 신청자(1인당 10kg) (10kg 26,420원 : 2,600원 본인부담)
	주거 · 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10kg 15,520원 (1인, 월10kg)	* 신청자(1인당 10kg) (10kg 26,420원 : 10,900원 본인부담)

27 국민기초생활보장 감면제도

•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351-7062

구분	지 원 내 용	비 고
수급자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 주민세(개인분) (세무2과에서 일괄 적용)
	○ TV수신료 면제(생계 · 의료수급자)	– 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123
	○ 전기요금 할인 – 생계 · 의료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7~9월 청구분 : 20,000원) – 주거 · 교육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여름철7~9월 청구분 : 12,000원)	– 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해당 수수료 면제(동 주민센터)
	○ 상, 하수도 월 사용량 및 물이용 부담금 10톤이내 (2개월 21,000원)) 감면	– 동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로 신청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120
	○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생계 · 의료수급자) – 공단에서 검사시만 면제, 예약 필수 ○ 자동차 보험료 할인	–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1577-0990 – 해당 자동차보험사에 보험료 할인 신청
	○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보철용,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1대 – 은평구 환경과 ☎351-7627

○ 도시가스요금 감면 (서울도시가스공사 강북4고객센터 386-4371/5 고객센터 394-6230 신청), 주민센터 신청 대행

구 분		생계 · 의료수급자	주거수급자, 차상위계층	교육수급자, 다자녀가구
취사용 사용가구		1,680원	840원	420원
취사 난방사용	동 절 기(12월~3월)	24,000원	12,000원	6,000원
	기타 월(4월~11월)	6,600원	3,300원	1,650원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생계 · 의료수급자)	– 1인 월 40ℓ 지급, 2인이상 월 80ℓ 지급(동 주민센터)

○ 통신요금감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구 분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비고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가입자 접속서비스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면제 · 데이터 및 국내음성 각 50% 감면 ※ 월 최대 41,000원 한도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음성통화, 데이터통화료 각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알뜰폰 사업자 제외
번호안내	· 전액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기타지원	○ 임대주택(공공,재개발,국민임대) ○ 영구임대주택 신청	– SH공사(http://www.i-sh.co.kr) ☎1600-3456 – LH공사(http://www.lh.or.kr) ☎1600-1004 – 동 주민센터, 생활복지과 ☎351-7085
	○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채무조정) ○ 서민금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개인 파산 ·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법원 안내 창구 방문 서울중앙지방법원 ☎530-1114
	○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 ○ 가정간호, 재가 암 환자 관리서비스 ○ 암 치료비 지원	– 보건소 건강증진과 ☎351-8243 – 보건소 보건의료과 ☎351-8298
	○ 부동산 중개수수료 면제	–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1588-0087
	○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 동 주민센터, 생활복지과 ☎351-7052
	○ 집수리사업, 이웃돕기 결연 · 후원 ○ 복지시설, 재가복지서비스 연계	–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등
	○ 저소득층 무료접종사업	– 보건소 건강증진과 ☎351-8232
	○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1599-2000

28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351-7065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신 청 인 : 지원대상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신청 가능 ○ 해당자 확인 : 동 주민센터
지원절차	○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양곡대금 입금 (매월 10일 전까지 입금)

생계급여수급자	– 생계급여에서 양곡대금(본인부담액) 차감 – 동 주민센터 관리계좌 입금(차감할 생계급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료 · 주거 · 교육수급자	– 동 주민센터 관리계좌에 입금
차상위가구	– 동 주민센터 관리계좌에 입금

○ 대상자 송부 및 양곡대금 송금(구청 및 서울시)
○ 배송기간 : 매월 21일 ~ 익월 15일(신청 주소지로 배송)
○ 배송기관 : 행복나르미(통일로 715, 9층 혁신밸리 1-3) ☎ 070-4632-7225~6)

지원내용

○ 정부양곡 할인 지원

(단위 : 천원, 포)

구분	양곡 판매가격 (농림부 고시)	생계 · 의료수급자		주거 · 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할인)	본인부담	지원(할인)	본인부담
10kg	26,420	23,820	2,600	15,520	10,900

* 배송비 기준 : 가구 10kg 1포 2,800원(추가 10kg 1포마다 1,400원)
* 구입 상한량 :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

29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총괄〉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351-6226
- 〈조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351-7021~35
- 〈변동〉 생활복지과 통합관리팀 ☏351-7091~9

구 분	내 용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대상	○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신청방법	○ 신 청 인 : 지원대상 가구원 · 친족 ·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 72%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 원)

구 분		가구원 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 중위소득 60% (증명서발급대상자)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 중위소득 72% (증명서발급대상자)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조사범위			
조사범위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재산	적 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주거용 재 산	○ 소득환산율 : 월 1.04% ○ 대 상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1억2,000만원[대도시기준]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일반 재 산	○ 환산율 : 월 4.17% ○ 대 상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자동차【2000cc미만 장애인사용 차량, 1600cc미만 중 생업용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10년 미만인 경우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 차량), 압류 등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이륜자동차(260cc 이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예외사항 : 2000cc미만 장애인1~3급 이동수단사용 자동차 산정제외, 생업차량 50%만 산정 – 단, 소득파악 철저)
		금 융 재 산	○ 환산율 : 월 6.26% ○ 대 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 공 제 : 생활준비금 가구당 500만원, 3년 이상 장기저축 가구당 연간 500만원 한도, 총 1,500만원 공제
		자동차	○ 환산율 : 월 100% ○ 대 상 : 승용, 승합자동차, 260cc이상 이륜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중 밴형 화물차량(2000cc미만 장애인차량 제외)
		부 채	○ 대 상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일반부채 ○ 공 제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공공기관 대출금, 미소금융 대출금,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한국해비타드에서 집짓기 사업을 지원받아 주택을 소유한 수급(권)자의 상환 대상 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확인된 경우,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개인 간 부채(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 ·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부양의무자		○ 기 준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처리절차			신청서류 제출 및 초기상담(동 주민센터) ⇒ 서류 접수 및 조사(복지정책과) ⇒ 보장결정, 통지, 급여지원(가족정책과) ⇒ 관리(동 주민센터, 생활복지과)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1인당 월 200,000원(만18세 연령도래 생일 전달까지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0,000원('21.5월부터 적용)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월 50,000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0,000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0,000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양육비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 자녀학비등 보조금 지원 – 학 비(고등학생) : 수업료 연 4회, 신입생인 경우 입학금 연 1회 – 교 통 비(중 · 고생) : 86,400원(연 4회), 학용품비(중 · 고생) : 54,100원(연 1회, 중고생) ※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급여 아동양육비, 추가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등 보조금 지원대상 아님

30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 〈총괄〉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351-7064
- 〈조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351-7021~35
- 〈변동〉 생활복지과 통합관리팀 ☏351-7091~9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신청방법	○ 신 청 인 : 수급권자 · 친족 ·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 재산 확인서류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선정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산정 원칙 ※ 공적자료를 통한 확인이 곤란한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 제외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지원내용	○ 정부양곡 할인지원(10kg 정부양곡 가격 26,420원, 본인부담 10,900원) – 1인당 월 15,520 할인지원 ○ 이동전화요금 감면 (알뜰폰 제외) – 감면내용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 최대 21,500원) – 범 위 :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 신청기관 : 해당 이동통신사 대리점(알뜰폰 사업자 제외) ○ 전기요금 할인 – 감면내용 : 가구당 월 8,000원 한도(7 ~ 9월 : 10,000원) –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123) ○ 도시가스요금 할인 – 감면내용 : 취사용 사용가구 – 월 420원 취사 · 난방 사용가구 동절기(12 ~ 3월) – 월 6,000원 기타월(4 ~ 11월) – 월 1,650원 – 신청기관 : 서울도시가스(☎1588-5788) ○ 기타 중앙부처 사업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 희망키움통장 II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푸드뱅크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한국에너지재단) – 열요금 감면(한국지역난방공사)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 국민취업지원제도(관할 고용센터 ☎1350)
지원절차	○ 신청서류 제출 및 초기상담(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재산조사(복지정책과) ⇒ 보장결정 및 통지(생활복지과) ⇒ 관리 및 지원연계(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

31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현황

•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 ☏351-7053

구 분		내 용				
참여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있는자(조건부수급자) 및 일반수급자 등 희망참여자				
자활유형		① 근로유지형	② 사회서비스형	인턴 · 도우미형		⑤ 시장진입형
				③ 복지 · 자활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④ 인턴형	
사업내용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으로 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 등 (매출액 총사업비의 10% 이상 발생)	자활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조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인턴사원으로 일하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은 후 취업유도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 지향 (매출액 총사업비의 30% 이상 발생)
대상사업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공익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분야로 향후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 (수익 창출 지향)	자활기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복지업무 보조	수급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하고 기술습득이 가능한 중소기업, 개인업체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
실시기관		구(동) 직접시행	민간위탁	구(동) 직접시행	민간위탁	민간위탁
세부사업		지역청소 및 환경정비, 공공시설물 관리 보조 등	유품정리, 환자식 배달 등	자활사업, 복지 사업, 복지시설 도우미	단순노무 지양, 기술습득 가능한 업체 근무	보육시설도우미, 학교청소
추진방식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舊 취로사업)	지역의 자활사업 및 복지사업 여건에 맞게 사업추진	지역자활센터, 구청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복지업무 보조	단순노무 지양 6개월 지원 (12월까지 연장가능)	단위사업별로 사업단 구성하여 추진
근로조건	근무일	1일 5시간 / 월16일	1일 8시간 / 주5일	1일 8시간 / 주5일	1일 8시간 / 주5일	1일 8시간 / 주5일
	급여기준	1일 26,120원 (실비 4,000원)	1일 47,350원 (실비 4,000원)	1일 54,660원 1일 47,350원(시설) (실비4,000원)	1일 54,660원 (실비 4,000원)	1일 54,660원 (실비 4,000원)
	월 평균 급여	월 560,280원	월 1,267,750원	월 1,450,500원 월 1,267,750원(시설)	월 1,450,500원	월 1,450,500원
수행기관		○ 동 주민센터	○ 은평지역 자활센터	○ 구청(복지부서) 및 동 주민센터 ○ 은평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시설	○ 은평지역 자활센터	○ 은평지역 자활센터

32 자활사업 서비스 안내

•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 ☏351-7053

구 분	사 업 명	내 용	문 의 처
광역 공동체	**사랑보듬이** (장애아동교육보조)	○ 은평구 내 초 · 중 · 고교 및 주간보호 센터에 보조원 파견(주5일 9시~18시)	☎ 02-307-1186
자활 기업	**신우존** (집수리사업)	○ 상담을 통해 집수리사업 금액 결정 (전화상담 후 무료방문 견적)	☎ 02-307-1186 ☎ 010-6306-5802
	크린시아 (청소용역)	○ 상담을 통해 청소비용 금액 결정 (전화상담 후 무료방문 견적)	☎ 02-307-1186 ☎ 010-3112-5730
	㈜행복나르미 (정부양곡배송)	○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배송	☎ 02-307-1186 ☎ 070-4632-7225
	안녕차야 (출장세차)	○ 세차서비스 및 세차용품 유통	☎ 02-307-1186 ☎ 010-3774-6226
자활 사업단	**조리지원** (보육인력)	○ 관내 어린이집 등 보육 보조, 조리 보조 (월 60만원)	☎ 02-307-1186
	청정모드 (학교청소)	○ 서울 시내 학교 및 교육청 산하 기관 청소 (청소 비용 무료방문 견적)	☎ 02-307-1186
	마마손길 (가사도우미)	○ 대상 : 은평구 및 인근지역 일반가정 ○ 상황에 따라 시간 및 가격 조정될 수 있음 – 4시간 50,000원 / 8시간 90,000원 – 추가요금 시간당 10,000원	☎ 02-307-1186
	병원지원	○ 병원 청소	☎ 02-307-1186
	은평클린복지 (공익형)	○ 유품정리 및 홈클리닝(소독, 방역 등) – 무료 : 독거어르신 수급자 – 유료 : 일반인(상담을 통해 비용 결정) ○ 돌봄SOS 주거편의지원서비스	☎ 02-307-1186
	지역협력	○ 돌봄SOS 식사지원서비스(홈시니어식) ○ 홈케어식 배송	☎ 02-307-1186
	바른배송	○ 택배/카드배송	☎ 02-307-1186
	인턴형	○ 은평구내 업체 인턴형 인력파견	☎ 02-307-1186
	청소(시간제)	○ 복지시설 청소 등	☎ 02-307-1186
	청년자립도전	○ 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	☎ 02-307-1186
	임가공(시간제)	○ 시간제 임가공(부업)	☎ 02-307-1186
	희망푸드 (공익형)	○ 기부음식 등 배송(은평푸드마켓)	☎ 02-307-1186
	내일스토어편의점	○ GS25 대조행운점 운영	☎ 02-307-1186
	새싹가게편의점	○ CU 은평갈현점 운영	☎ 02-307-1186

33 차상위 자활사업

- 〈총괄〉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 ☏351-7055
- 〈조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351-7021~35
- 〈변동〉 생활복지과 통합관리팀 ☏351-7091~9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내 용</th></tr>
<tr><td colspan="3">지원대상</td><td>○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차상위자(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td></tr>
<tr><td colspan="3">신청방법</td><td>○ 신 청 인 : 수급권자 · 친족 ·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 등
○ 처리절차 : 신청(동주민센터) ⇒ 조사 및 결정(복지정책과) ⇒ 급여지원(생활복지과) ⇒ 관리</td></tr>
<tr><td colspan="3">선정기준</td><td>○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의 50%이하
(단위 : 원)
<table><tr><th>가구규모</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6인</th></tr><tr><td>선정기준</td><td>972,406</td><td>1,630,043</td><td>2,097,351</td><td>2,560,540</td><td>3,012,257</td><td>3,453,502</td></tr></table></td></tr>
<tr><td rowspan="8">조사범위</td><td colspan="2">소득평가액</td><td>○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부양비 산정 제외</td></tr>
<tr><td rowspan="7">재산</td><td>적 용</td><td>○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13,500만원</td></tr>
<tr><td>주거용 재 산</td><td>○ 환산율 : 월 1.04%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분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 적용한도 : 10,000만원(※ 한도액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td></tr>
<tr><td>일 반 재 산</td><td>○ 환산율 : 월 4.17%
○ 대 상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자동차【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② 질병 ·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③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④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자동차재산 구분" 적용】</td></tr>
<tr><td>금 융 재 산</td><td>○ 환산율 : 월 4.17%
○ 대 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금전신탁
○ 공 제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 이상 장기저축 연간 500만원 한도(1,500만원 공제)</td></tr>
<tr><td>자동차</td><td>○ 환산율 : 월 100%
○ 대 상 : 승용, 승합자동차, 260cc초과 이륜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자동차 제외)</td></tr>
<tr><td>부 채</td><td>○ 대 상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일반부채
○ 공 제 : 인정된 부채는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인정</td></tr>
<tr><td colspan="2">부양의무자</td><td>○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td></tr>
<tr><td colspan="3">지원내용</td><td>○ 자활사업참여 : 사회서비스형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1일 47,350원), 시장진입형(1일 54,660원), 복지 · 자활도우미(1일 54,660원) / 실비 4,000원 추가 지급</td></tr>
</table>

34 국민취업지원제도Ⅱ(舊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센터 ☎1350, 2077-6000
-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 ☎351-7055

구 분	내 용
목 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제도
참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자치단체 추천으로 우선 선정) ※ 자활역량평가 80점 이상 참여 가능 ※ 단, 조건부과 제외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및 6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의 구성원(서울서부고용센터로 직접 접수)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실시 **1단계 : 의욕증진 및 취업경로설정** ▶ 구직의욕 제고, 경로설정 • 취업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2단계 : 직업능력 · 직장적응력 증진** ▶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직업훈련(훈련과정에 따라 5~20%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 집중 취업알선 • 구인처 탐색 및 구인정보 제공 • 동행면접 등
제외기준	○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 취(창)업하고 있는 자 ○ 정상적인 사업 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간 대학 · 대학원 재학생
지원절차	○ 수급자 : 초기상담(동 주민센터, 생활복지과) ⇒ 고용노동부 의뢰(생활복지과) ⇒ 조건부수급자 조건이행 여부 확인(생활복지과) ○ 수급자 외 : 상담, 신청 및 취업지원(고용노동부)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50% 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60% 이하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허용 (서울서부고용센터로 직접 접수)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건설 일용직 등

35 가사 · 간병방문 지원사업

•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 ☏351-7052

구 분	내 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지원목적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하여 간병 · 가사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및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① 1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② 2순위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대상자는 자녀, 손자녀 해당) ③ 3순위 :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장애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부상장기치료자)
소득확인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보모가족지원은 별도 자산 · 소득조사 절차없이 소득기준 적합 인정 ○ 공식 확인된 자산 ·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 부합여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단
선정절차	○ 서비스희망자 → 동 주민센터 신청및접수 → 상담 · 조사(구) → 이용자 선정 및 통지(구) ※ 신청시 동주민센터에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받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자격 조건 확인후 제출
제외대상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자활 간병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이미 가사 · 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서비스 시간 : 월 24시간 이내 또는 27시간 이내 ○ 이용 가능 서비스 : 신체수발, 신변활동, 가사, 일상생활 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구강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쇼핑, 식사준비, 청소,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장소 : 재가 ○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 : 시간당 15,600원 – 소득수준에 따른 바우처 지원액 및 정액 본인부담금(결제시스템 : 바우처카드 사용)
제공기관	○ 은평돌봄복지센터(연서로170-1 2층 ☏353-1315) ○ 엔젤노인복지센터(통일로78길 26 2층 ☏388-8112) ○ 성실노인복지센터(갈현로41길20-1 1층 ☏357-2439)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 가사 · 간병방문서비스 신청 : 매월 1일~2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 동 주민센터 신청 → 구 등급판정 → 결정통지서 수령 후 서비스 제공 기관과 개별계약 체결 ○ 가사 · 간병방문도우미 자격 : 만 18세 이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제공시간	대 상 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 · 의료급여 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 · 의료급여 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제

36 긴급복지지원

- 동주민센터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351-7014~15
- 보건복지(긴급지원)콜센터 ☏ 129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소득, 재산, 금융기준 모든 기준 이하여야 가능)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 월 3,840,810원) –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6.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 · 폐업, 화재,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坊任), ·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및 무급휴직자
신청방법	○ 신 청 인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신청기간 : 연중 ○ 접 수 처 : 동 주민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129콜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 재산확인서류(가구구성원 통장사본 등) 등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 · 현물	생 계 지 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9천원 (4인기준)
	의 료 지 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이내
	주 거 지 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이내 (4인기준)
	사회복지시설 이 용 지 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1,450.5천원 이내 (4인 기준)
	교 육 지 원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지원	– 초 124.1천원 – 중 174.7천원 – 고 207.7천원
	그 밖의 지원	동절기연료비 : 106천원/월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 각 1회	
민간기관 ·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 · 단체로의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지원절차

위기상황 발 생 → 신고접수 (동주민센터/☎129/구청) → 현장 조사 (담당공무원) → 지원실시 (구 청 장) →

사후조사 (담당공무원) → 적정성심사 (심의위원회) → 적 정 / 부 적 정 → 지원연장/종료 (지원중단/비용환수)